

2023년 강북구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가. 아이돌봄서비스 의미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I 아이돌보미 활동 및 직무

1 아이돌보미 신청 및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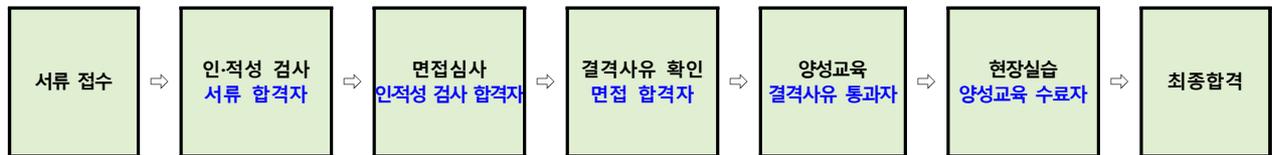
가. 신청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치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나. 신청 기간 : 강북구가족센터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강북구 가족센터 채용공고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다. 선발 :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양성교육

- 교육기간 :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아이돌봄 직무 이해, 아동안전·건강관리,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돌봄의 이해 등
- 교육시간 : 총80시간(1일 8시간 * 10일 동안 이수)
- 교육비 : 본인부담금 20만원(단, 의무 활동 이행 시 전액 반환 예정)

○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선배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에서 실습 진행
- 총 20시간 이내 진행

2 활동 시간 및 수당

가. 활동시간

○ 돌봄수당(기본시급) : 9,6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퇴직연금,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활동 시 주휴수당 발생 등)

※ 참고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

- **소정근로시간** : 평일(무급 휴무일 포함/월요일~토요일) 동안 근로한 시간으로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장근로시간은 제외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평일은 월요일~토요일임, 공휴일 제외)
- **주휴수당**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
- **주휴수당 산정기준**
 - 아이돌보미의 경우 사전에 1주간 소정근로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함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음
 -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임

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 2023년 지급 기준, 변동 될 수 있음)

- 기본시급(9,630원)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3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2,890원
 - 아동 추가 : (2명) 4,815원, (3명) 9,630원
- *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 영아전담돌봄(지정자에 한함) : 1,000원(60시간 미만 활동시 미지급)
 - 아픈아이돌봄 : 1,000원(병원 동행시에만 지급, 월 최대 50,000원)

3 활동 개요

가. 근로계약 체결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활동 수행

나.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 체결 후 돌봄 수행
- 연계 기준
 -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2시간~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른**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예외적으로 주말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 시에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협의로 변경 가능하며 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사후변경 조치
- 활동시간
 - **평일 : 월요일~토요일** / 주말 : 일요일 / 주휴일 : 일요일
 - **주간 : 06:00~22:00** / 야간 : 22:00-06:00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4 주요 직무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돌봄 활동 중 긴급상황 발생시 병원 동행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서비스 종류		돌봄 대상	돌봄 업무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 + 가사병행 ※ 가사병행 : 아동관련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청소·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질병감염아동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나.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돌봄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 제공
-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후 부모에게 연락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대상자로 신고 될 수 있는 “보호자”인 동시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이기도 함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라. 성범죄 등 신고의무

-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법 제67조]

II 자격정지·취소 등

1 연계중지

-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다음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시적 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중지할 수 있음
 - 자격정지, 자격취소, 활동정지 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아동에 대한 학대·폭행·치상·유기 의심으로 신고 된 경우(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판결 등 전문기관의 판단 확정시까지)

2 활동정지

가. 사유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 필요(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아이돌보미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서식 5호]상의 준수사항 위반
-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 반복(각 3회 이상)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옷돈 요구, 부정수급 공모 시(환수 조치 대상)
- 돌보는 아동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 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

나. 기 간 : 최대 6개월 이하로 활동정지 기간 결정

3 자격 정지 및 취소

가. 권 한

-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은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임[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하고,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지(공문 시행)하여야 함

나. 자격정지[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헐뜯는 행위
 -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제16조 관련) 참조

다. 자격취소[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라. 취업규칙 및 복무의무 미준수에 따른 징계

- 그 밖의 복무의무 및 취업규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행위(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

< 복무규율 준수사항 >

1. 아이돌보미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정관 기타 제 규정과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아이돌보미는 휴일이 아닌 날에 센터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수 없고,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질병, 상해, 기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시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될 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이돌보미는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준수하며 센터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4.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수행 중 아이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 신청자와 센터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아이돌보미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으로 사례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아이돌보미는 센터의 서비스연계 변경 계획에 따라야 한다.

※ 센터는 특정 아이돌보미에게만 원거리, 야간시간대, 특정유형 가정 등에 서비스가 배정되어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비스연계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할수 있음

7. 아이돌보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8. 아이돌보미는 근로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용자 가정의 양육방식을 최대한 존중한다.

9.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근로를 종료하여야 한다.

10.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을 돌봄 장소로 불러들이거나, 돌봄 장소를 바꿀 수 없다. 단, 돌봄활동 중 아동의 안전 등 위급상황 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11. 아이돌보미는 활동 모니터링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모니터링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2.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13. 아이돌보미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 및 이용가정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아이돌보미는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 및 동료 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센터에 손해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15. 아이돌보미는 매년 자격유지 및 직무관련 지식,기술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6. 아이돌보미는 센터 및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취업규칙 유의사항 >

(징계해고)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3회 이상 연계를 거부하거나, 소급 1년간 5회 이상 한 자
- 무단결근을 계속해서 3일 이상 하거나, 소급 1년간 5일 이상 한 자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정직)

- 이용가정에 대한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이 반복(각 3회 이상)되는 경우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옷돈 요구, 이용자와 부정수급(환수대상)을 공모한 경우

(출근, 퇴근, 결근)

- 아이돌보미는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아이돌보미는 근무시간이 종료되어야 퇴근할 수 있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퇴근할 수 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서비스 배정 완료 후 개인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결근한 것으로 본다.